공직 선거법 위반

[대법원, 2011.12.27, 2011도13285]

【판시사항】

[1]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‘ 단체의 선거운동 ’ 의 의미

[2]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로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는 모임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‘ 단체의 선거운동 ’ 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, 피고인이 회원들과 공모하거나 회원들에게 지시하여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

【판결요지】

[1]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,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‘ 단체의 선거운동 ’ 이란 단체,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.

[2]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로서 특정 정당 전(前) 대표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는 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’ (이하 ‘ 박사모 ’ 라고 한다)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‘ 단체의 선거운동 ’ 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, 피고인을 비롯한 모임의 일부 회원들이 해당 선거구 내 시장, 지하철역 일대 상가와 점포를 방문하여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, ‘ 박사모 ’ 중앙본부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하려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듣고 미리 행사를 취소하였고, 그럼에도 일부 회원들이 지방에서 상경하자 피고인이 그들에게 ‘ 박사모 ’ 구호를 외치거나 낙선운동 및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, 당시의 제반 정황상 회원들이 ‘ 박사모 ’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당시 일반 선거인들 입장에서 ‘ 박사모 ’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지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회원들과 공모하거나 회원들에게 지시하여 ‘ 박사모 ’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.

【참조조문】

[1]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, 제255조 제1항 제11호

[2]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, 제255조 제1항 제11호, 형사소송법 제325조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상 고 인】 검사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서성건

【원심판결】 서울고법 2011. 9. 27. 선고 2011노1820 판결

【주문】

】 상고를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향우회 · 종친회 · 동창회, 산악회 등 동호인회,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(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.

이하 ‘ 단체 ’ 라 한다)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,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전단에서 제8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이처럼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,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‘ 단체의 선거운동 ’ 이란 단체,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‘ 다음(daum) ’ 에 개설된 카페로,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는 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’ (이하 ‘ 박사모 ’ 라 한다)의 대표자인 피고인을 비롯한 ‘ 박사모 ’ 회원 수십 명이 2010. 7. 17.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연서시장, 연신내 지하철역 일대 상가와 점포를 방문하여 “ 7 · 28 투표 먼저 하고 휴가 갑시다.

선거법 제58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” 라고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고, 일부 ‘ 박사모 ’ 회원들이 “ 이재오을 떨어뜨려야 한다.

이재오을 찍지 말라. ”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, ① ‘ 박사모 ’ 중앙본부는 2010. 7. 28.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010. 7. 17. 이재오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려 하였으나,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듣고 2010. 7. 13. 그 행

사를 취소하였던 점, ② 위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‘ 박사모 ’ 경남서부지회, 대구지부, 부산본부 등 일부 ‘ 박사모 ’ 회원들은 서울 은평구 일대로 상경하였고, 피고인은 지방에서 상경한 ‘ 박사모 ’ 회원들에게 ‘ 박사모 ’ 구호를 외치거나 낙선운동을 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, ③ 최주호 작성의 진술서에는, 은평구민체육센터 로비에서 사람들이 우의 등을 각자 챙기는 과정에서 ‘ 박사모 ’ 라고 적힌 조끼를 보았으나, ‘ 박사모 ’ 회원들이 그 조끼를 입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, 최주호는 가방에 들어있는 파란 조끼를 보았는데 그 조끼에 ‘ 박사모 ’ 라고 적혀있는 것을 본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, ‘ 박사모 ’ 회원들이 그 조끼를 착용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‘ 박사모 ’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, ④ ‘ 박사모 ’ 은평구 을 활동상황 채증자료에 의하면, 선거감시단원들이 ‘ 박사모 ’ 회원들에게 어디에서 왔는지, 어느 단체인지 물었으나 대답은 듣지 못했고, 연서시장 상인들도 어디 사람들인지 모른다고 답변하여 당시 일반 선거인들 입장에서 볼 때 ‘ 박사모 ’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, 피고인이 ‘ 박사모 ’ 회원들과 공모하거나 ‘ 박사모 ’ 회원들에게 지시하여 ‘ 박사모 ’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,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.

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,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‘ 단체의 선거운동 ’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박병대(재판장) 박일환 신영철(주심)